



04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질의응답



Q1. 유학생은 언제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되나요?

√ 유학생 당연적용 시행일인 2021.3.1.

-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(D-2)은 2021.3.1.에 가입됩니다.
- 어학연수생 등 일반연수(D-4) 체류자격을 받은 유학생은 국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.

Q2.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공단지사에 방문해야 하나요?

√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신청하지 않아도, 공단에서 자동으로 가입처리 합니다.

※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
- 가족(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)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
-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(F-4) 유학생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
- 체류지(거소지), 여권번호,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



Q3. 당연적용 시행일('21.3.1.)에 취득되는 신규가입자 보험료

√ 43,490원 (4월 선납보험료 39,540원 + 3월 정산보험료 분할분 3,950원)

- 유학생은 '21.3월분 보험료부터 외국인 보험료의 30% 부과 → 월 보험료 ㉠39,540원
- 시행일('21.3.1.)에 취득되는 신규가입자는 3월 보험료와 4월 보험료가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, 3월 정산보험료 10회 분할납부 → 1회 분할분 ㉡3,950원



- 따라서, 첫회 보험료는 43,490원 (㉠+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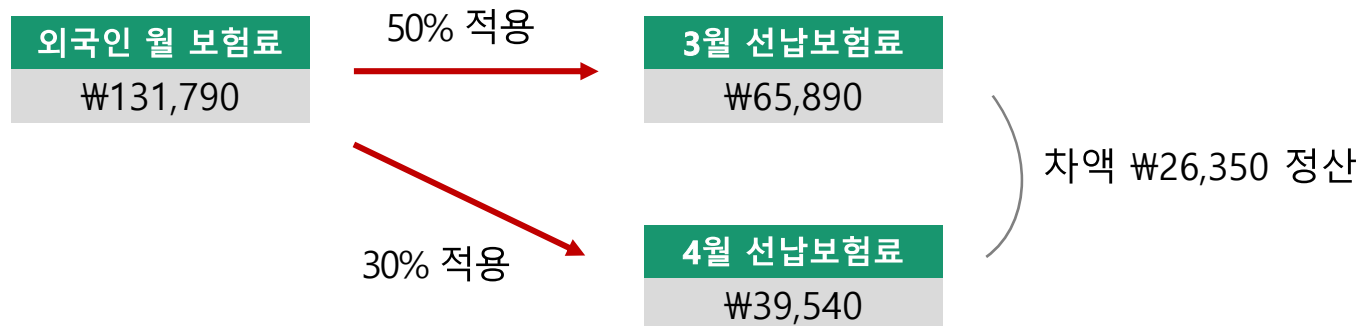
첫회 보험료 ₩43,490	=	유학생 월 보험료 ₩39,540	+	1회 분할분 ₩3,950
---	---	--	---	--



Q4. 기존 가입자 보험료

√ 기존 가입자도 '21.3월분부터 보험료 30% 부과 적용

- 2월에 고지되는 3월 선납보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50% 적용된 금액(65,890원) 납부
- 2021.3.5.에 4월 선납보험료 산정(30% 부과 적용) → ㉠39,540원
- 3월분 30% 부과 적용하여 정산처리 → 차액 ㉢26,350원



- 따라서, 4월분 보험료는 13,190원 (㉠-㉢)

실제 납부할 보험료 ₩13,190	=	4월 선납보험료 ₩39,540	-	3월분 정산환급 ₩26,350
---	---	---	---	---



Q5. 건강보험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- √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
- (본인일부부담) 입원 및 외래 진료비의 일부만 부담하여 본인부담금이 적음
- (건강검진혜택) 일반검진 및 암검진 혜택 제공
- (이용의 편리성) 진료 후 별도의 보험금 청구절차 없음
- (병원 접근용이) 국내 설립된 대부분의 의원, 병원, 약국 등 이용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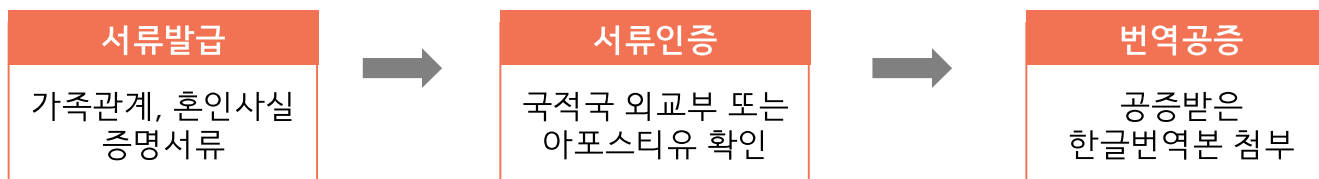
Q6.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?

- √ 입원은 진료비의 20%, 외래는 30~60%를 본인이 부담하며, 나머지는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불합니다.
- * 진료비 :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만 해당되며, 비급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함



Q7. 가족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

√ 가족관계나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인증받은 후 제출합니다.



- (서류인증)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, 국적국 외교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 필요
- (번역공증) 공증인이 공증하거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번역본 첨부
- (유효기간) 국내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, 외국서류는 발급일(확인일)로부터 9개월 인정



Q8.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?

√ 외국의 법령, 외국의 보험,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① 외국의 법령

- 정부 간 협정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의무 면제하는 경우(프랑스)
- 본국에서 자국민의 국외 발생 의료비를 보상하는 경우(일본)
- 정부관료, 군인, 퇴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경우(미국, UN)

② 외국의 보험

- 본국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다가 국내 입국 후 계속해서 해당 보험으로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
 - * 국내에서 출시된 보험상품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제외 불가능
 - * 외국인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면 건강보험 가입제외 인정

③ 사용자와의 계약

- 외국 본사에서 우리나라로 직원을 파견하면서 단체보험 혜택을 주거나 의료보험을 대납하는 경우
- 외국 회사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경우 등

※ 위의 사유 없이는 건강보험 가입제외 불가능합니다.



Q9. 일본 유학생이 당연적용 시행('21.3.1.) 이전에 미리 건강보험 가입제외할 수 있나요?

√ 건강보험 가입 이전에 미리 가입제외 신청 가능합니다.

Q10. 어학연수 중인 재외국민도 유학생으로 인정하여 입학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?

√ 재외국민 어학연수생은 입학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- 재외국민, 재외동포(F-4)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경우만 유학으로 인정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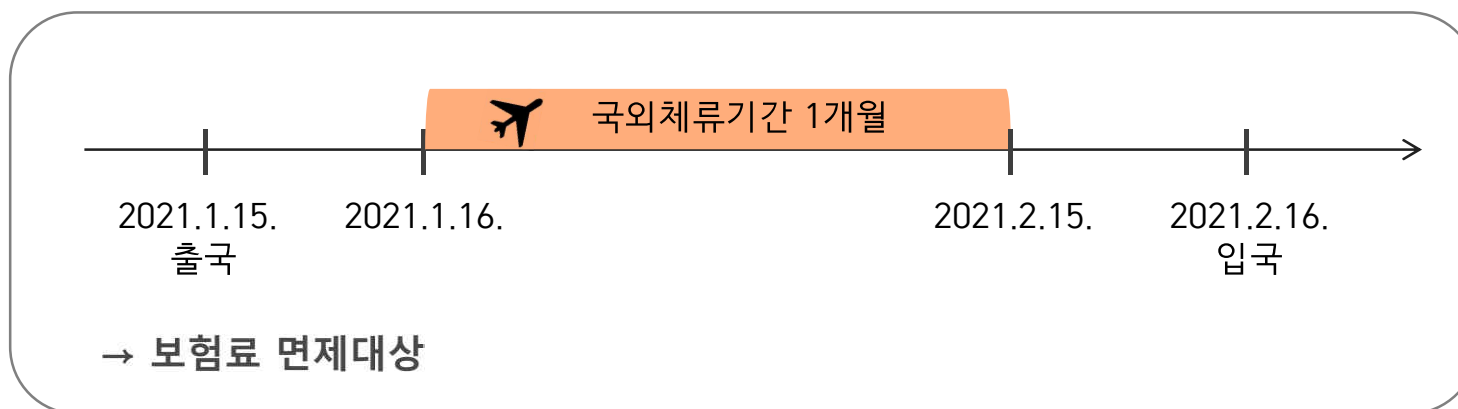
※ 대학부설 어학원 및 기타기관 연수생은 인정 불가



Q11. 방학동안 본국(외국)에 오래 다녀오는 경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?

√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(가입자 자격상실).

※ 1개월 미만 국외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.





Q12. 휴학생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?

- √ 휴학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- 다만,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체류하는 경우에는 국외체류기간 중 보험료 면제됩니다.

Q13. 재외국민인데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.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?

- √ 군복무 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.
- 공단에서 부담하던 진료비용은 국방부에서 대납(공단-국방부 진료비 정산)하고 있으며,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Q14.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어 직장가입자가 되었습니다. 지역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?

- √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통해서 직장보험료를 납부하므로, 지역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.
- '21.2.15. 일자로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, 2월까지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고 3월부터 직장보험료를 납부합니다.
 - '21.2.1. 일자로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, 2월부터 직장보험료를 납부합니다. (1일자 기준)

Q15.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, 보험료가 인상되나요?

- √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세대를 합가하여 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더라도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.
- * 다만, 국내 체류지(거소지)가 동일해야 합니다.



Q16. 재외동포(F-4) 대학원생도 외국인 보험료의 30%만 납부하면 되나요?

√ 재외국민, 재외동포(F-4) 대학원생은 보험료 경감대상이 아닙니다.

구분	가입일	보험료 적용 ('21.3월분부터)
유학(D-2)	외국인등록일	30%
일반연수(D-4)	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	30%
재외국민	교육부 인정학교*에 입학한 경우 입학일 (어학연수 불인정)	대학 이하인 경우 30% (대학원 불인정**)
재외동포(F-4)		

*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, 외국인학교, 대안학교 포함

** 방송대학, 통신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대학원, 대학원대학 불인정 (보험료 100% 적용)



Q17. 등록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데, 학교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안되나요?

- √ 학교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는 없으며,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.
- √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이메일 및 모바일로 고지서를 간편하게 받아보거나,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Q18.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- √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병원, 의원 등을 방문할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됩니다.
 - 납부기한의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제한
- √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
 - 보험료 50만원 이상, 기타징수금 10만원 이상인 경우
- √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,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내 소득, 재산 등에 대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.



Q19.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?

√ 3회 이상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, 체납월수만큼 분할납부 가능합니다.

Q20. 유학생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?

√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일반건강검진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2년(비사무직 1년)마다 1회 이상 실시

* 2021년도는 홀수 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이 됩니다.